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7 선고 2021가단102810 판결 [보증금반환 등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상엽

피 고 B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홍성주, 박도건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3.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35,620원 및 그중 12,155,76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8.부터 2021. 3.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98,379,86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8.부터 2023. 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15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① 체육 및 레저시설운영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4. 8. 13.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북구 C에 있는 B 아파트 단지 내의 커뮤니티센터 1(다목적홀과 북카페를 제외한 헬스장, GX룸,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정장, 기계실 등), 커뮤니티센터 2(지하 1층 주민운동시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7. 11. 8. 피고와 사이에 위 커뮤니티센터 1(다목적홀과 북카페를 제외한 헬스장, GX룸,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정장, 기계실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계약은 2020. 11.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위탁수수료 12,155,760원 지급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계약 중 위탁수수료 지급, 이행강제금 차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위탁업무의 범위】

4.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이나 손실액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과 권리를 갖고,

“을”은 손실금 발생 시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시설물 인도 및 책임】

6. “갑”은 위탁운영 관리수입에서 각종 공과금 등을 제외한 위탁수수료를 익월 말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제13조【관리감독】

1. “을”은 매월 시설물 점검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을”은 매월 위생점검표를 작성하여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에 대하여 반기별로 운영, 서비스, 위생, 시설교체 등 전반에 걸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한 운영 및 민원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시에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시정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 불이행시에는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을”의 매출에서 월 1%를 이행강제금으로 차감한다.

②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입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아래와 같은 민원 요청사항을 통보하면서 ‘위 요청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커뮤니티센터 위생관리 개선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③ 피고는 2019. 8. 19.(월)부터 2019. 9. 16.(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총 5회 커뮤니티센터 시설 및 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원고에게 ‘청소가 미흡하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점검 현황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9. 9. 20. 원고에게 ‘최초 점검 이후 매주 월요일 4차에 걸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요구사항을 커뮤니티센터에 전달하였으나 일부 사항 외 여전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통지하면서, 2019년 8월 매출분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된 ‘매출에서 월 1% 이행강제금 차감’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점검을 실시하고 원고에게 그 점검 현황을 통보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2019년 8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의 위탁수수료에서

이행강제금 명목의 금원으로 합계 12,155,760원을 차감하고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는 반기별로 감독권을 행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수시로 감독권을 행사하여 청결상태의 개선 등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시정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전부를 시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였고, 피고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시정하거나 최소한 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위탁수수료 12,155,76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① 남자 사우나의 탕 입구 바닥, 습식 사우나 바닥, 화장실 대소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등 곳곳에 녹물, 곰팡이, 물때를 청소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였고, ② 여자 사우나의 샤워부스 유리, 에어컨, 환풍기 등에 먼지, 곰팡이, 얼룩 역시 청소하지 않았고 2020. 1. 31.에는 천장 판넬이 떨어져 목욕 중이던 입주인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였으며, ③ 수영장의 바닥과 세면대 변색, 남녀화장실 바닥에 녹이 슬고 세면기 전등과 수도꼭지가 없는 상태로 운영하였고, ④ 골프장 타석기와 전등이 고장 난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⑤ 헬스장 각 탈의실 및 화장실 곳곳에 녹, 물 때, 얼룩이 진 채로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함으로써 명시적 · 묵시적으로 시정에 합의하였음에도 1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에 맞추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여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민원을 즉시 시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차감한 것은 정당하다.

다. 판 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위탁수수료에서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4항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차감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차감될 이행강제금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3조의 규정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의 운영, 서비스, 위생, 시설교체 등 전반에 걸쳐 반기별로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에 근거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한 운영 및 민원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② 이에 기하여 원고가 시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1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이행강제금을 차감할 수 있는 종기는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들을 살펴보면, ‘2020. 1. 31. 여자 목욕탕의 천장 판넬이 낙하하였다’는 부분 외에는 대체로 단순히 청소와 시설물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불만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시정 요구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3항에서 피고에게 부여한 반기별 감독권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4항에서 ‘시정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로서 적어도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명목으로 12,155,760원을 차감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명목으로 미지급한 위 위탁수수료 12,155,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탁운영이행보증금 100,000,000원 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에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운영이행보증금 1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 중 시설물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용시설물】

1. “센터” 내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 전기, 수도, 하수관련 배관 및 시설물 등의 고장, 수리 등의 책임은 “을”이 진다.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 및 인테리어는 “을”이 추가하여 운영한다.
3. 위탁운영 계약 만료시에는 상기의 설비 및 시설물 등이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기능의 상실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인수, 인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업무의 범위】

1. 센터의 건축물의 하자보수는 “갑”이 책임진다.
2. “을”은 센터의 시설물, 운동시설, 미화, 기계실 등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추가 시설투자 부분 및 전체 운동기계 기구(런닝머신, 골프장 타석기, 모니터 등 일체)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추가 시설 투자 공사】

1. “갑”과 “을”이 상호 합의 완료한 추가 시설 투자부분 (설비, 장비, 기구 등)에 대하여 “을”은 계약일로부터 “갑”과 합의한 날짜까지 투입하여야 한다.
2. 신규시설투자 및 개보수시에 “을”은 관련서류(전·후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갑”에게 문서로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갑”은 15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일 전까지 투자계획에 의한 세부투자내역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 후 시행하기로 한다.

제12조【시설물 인도 및 책임】

1. “을”은 “갑”에게서 인수한 대로 설비·집기·비품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을 진다.
2. “갑”은 “을”에게 기계장비 및 시설장비 인계 시 정상적으로 운영 및 가동 상태로 인수·인계한다. (사용상 기능 상실 및 여과기 등 소모품의 교체주기 경과 등)
3. 시설물의 개축 또는 개조는 “갑”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을”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위탁운영 계약 만료시 “을”은 추가 시설투자부분(설비, 장비, 기구 등)은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단, “갑”과 별도 정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7. 11. 8. 이 사건 재계약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다.

1. 초기시설 투자부분 : 기계실,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기타 외부 등
2. 투자금액 : 250,000,000원 (보일러 1기 신규교체 포함)
3. 이용요금 인상 : 2018. 1. 1.부터 10% 인상하기로 한다.(2017. 12. 31.까지는 현행 요금으로 적용)

- 2018년 인상분 10% 중에서 A이 3.71%, 아파트가 커뮤니티 시설물 유지보수 적립금 항목으로 6.29%를 배분한다.

5. 주요시설 추가설치

① 남·녀 건식사우나 : 바닥 및 의자 보수

남·녀 습식사우나 : 벽면보수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탁운영이행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 전기, 수도, 하수관련 배관 및 시설물 등의 고장, 수리 등의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계약 만료시 위 설비 및 시설물 등이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기능의 상실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인수, 인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전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 시설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고장나거나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 특히 별지 표 중 순번 5번 기재 보일러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0. 11. 20.경 원고의 운영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고, 순번 22, 27번은 원고가 피고와 협의 없이 비용 절감 목적으로 약품투입기장비를 차염산으로 교체 투입함으로 인하여 여과기의 급속한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여 보수비용이 추가된 것이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9,726,9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용상의 부주의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수 비용이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비용 중 상당한 범위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20년 12월분 도시가스 사용료 1,620,1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피고는 위 329,726,98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위 도시가스 사용료 1,620,14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 내 설비 및 시설물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로 피고에게 인도하면 될 뿐이고, 노후화된 설비 및 시설물 등을 교체한 후

인도하거나 소모품을 교체한 후 인도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설비 및 시설물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로 인도하였다. 피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에 소요된 것(순번 2, 5, 6, 10, 14, 15, 16, 21, 22, 24, 25), 시설 재개관을 앞두고 사용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한 것(순번 4, 8, 11, 12, 13, 18, 19, 20, 23, 26, 27, 30, 31), 사용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모품을 교체한 것(순번 1, 9, 28, 29),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4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이후에 시설 재개관을 앞두고 위 센터를 청소한 것(순번 3, 7, 9, 17, 32)으로서,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2020년 12월분 도시가스 사용료 1,620,140원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사용료를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①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수선 비용은 그 시설의 사용·수익·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부담함이 일반적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에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수선 비용을 소유자도 아닌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재계약을 하면서 원고의 시설 투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교체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원고가 약정하지 아니한 별개의 시설 투자 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재계약 당시에 커뮤니티 시설물 유지 보수 적립금은 피고에게 배분하도록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중 시설물에 발생하는 통상적인 범주 내의 고장에 대한 수리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계약 만료 시에는 위와 같은 통상적인 범주 내의 고장을 수리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① 이 사건 계약은 제12조 제2항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설물 인도 시의 여과기 등 소모품의

교체주기 경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시설물 반환 시의 소모품의 교체주기 경과에 대한 점검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인 2021. 2. 23.에 게시한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에서는 운영조건에 ‘소모품비(세탁비 포함)등은 업체에서 우선 지급하고 월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시에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 내의 소모품의 교체주기를 점검하여 교체주기가 경과된 소모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한 후 인도하였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별지 표 기재 보수 및 수리 비용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내역 중 별지 표 순번 1, 2, 4, 5, 6, 9, 10, 11, 13, 15, 16, 17, 19,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번은 부품 내지 설비 교체 비용이라는 것인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내역이 설비의 노후화 내지 소모품의 단순 교체주기 도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통상적인 범주의 고장으로서 원고가 수리하였어야 하는 사항이라거나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특히 주장하는 순번 5번 보일러도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수요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운영 부주의로 파손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순번 22, 27번의 경우에는 원고가 해당 장비를 임의로 교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내역 중 별지 표 순번 3, 7, 8, 12, 14, 18, 20, 29, 32번은 세척 비용, 설비 개선 내지 증설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내역이 원고가 세척하였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개선 내지 증설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년 12월분 도시가스 사용료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회사는 2021년 1월 청구한 사용료 1,620,140원의 사용기간이 2020. 11. 26.부터 2020. 12. 25.까지라는 사실과 원고가 납부한 전월 요금 14,036,520원은 그 사용기간이 2020. 10.

26.부터 2020. 11. 25.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가스요금 청구 및 납부명세서를 발행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 사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중단하였다는 것인 점, ③ 전월의 도시가스 사용료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액수가 2020. 11. 26.과 2020. 11. 27.의 이틀분 사용료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20년 12월분 도시가스 사용료 1,620,140원은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2020년 12월분 도시가스 사용료 1,620,140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위탁운영이행보증금 1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탁운영이행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위 도시가스 사용료 1,620,140원을 공제한 나머지 98,379,860원(= 100,000,000원 - 1,620,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535,620원(= 미지급 위탁수수료 12,155,760원 + 위탁운영이행보증금 98,379,860원) 및 그중 미지급 위탁수수료 12,155,7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20.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3.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탁운영이행보증금 98,379,8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20.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별지